

2024년 제4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4년 제4회 화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시험 방법	담당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홍보작가 (홍보팀)	7급	1	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언론인터뷰 - 축사 - 홍보문구 작성 - 홍보콘텐츠 제작 보조 및 관련 시나리오 작성 - 보도자료 및 기획보도 -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의회 SNS관리 - 그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

※ (계약기간 연장관련)근무실적 및 해당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계약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 포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라.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 (중증장애인의 경우 5년,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
홍보작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관련분야(언론, 인터뷰, 홍보, 문예창작, 보도, 대담, 기고문, 보도자료 작성 등)으로 일한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추가 필수자격요건】 •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 • 홍보 관련 업무 특성상 토 .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주야간 근무 가능한 자(초과근무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연봉액[기본연봉(하한액)]
홍보작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1,262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마.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바.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가. 접수기간 : 2024. 11. 4.(월) ~ 11. 7.(목) / 4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의회 의정팀(화성시의회 1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표는 접수 마감 후,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 (※ 서류제출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에서 **화성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 발송**

※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서식)

⑧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자체서식 또는 붙임서식]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날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수 기재**)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필수자격 요건 또는 우대조건에 있는 경우에 한함, 원본제출**)

⑭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⑮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⑯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 A4용지 단면 10매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

※ 개인정보(성명, 출신학교명, 출생지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시 활용할 예정(반환불가)

7

시 험 일 정

시험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4. 10. 23. ~ '24. 11. 7.	'24. 11. 4. ~ '24. 11. 7.	'24. 11. 13. (예정)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 연락 없음)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
- 인성검사·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 제공
-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하므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공고일정부터 연기 될 수 있음

8

기 타 사 항

- 가.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기제에 한함)

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 화성시의회 의정팀 (☎031-5189-2527)

붙임 직무기술서 각 1부. 끝.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홍보작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화성시의회	홍보팀

주요업무	○ 언론인터뷰 ○ 축사(의장) ○ 홍보문구 작성 ○ 기획보도 ○ 홍보콘텐츠 제작 보조 ○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등 SNS관리 ○ 그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
------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성실성)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홍보기법에 관한 지식 ○ 축사 작성 및 홍보문구 작성 능력 ○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능력
------	--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홍보작가(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관련분야(언론, 인터뷰, 홍보, 문예창작, 보도, 대담, 기고문, 보도자료 작성 등) 분야 관련 실무경력자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대요건	【추가 필수자격요건】 •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 • 홍보 관련 업무 특성상 토, 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주, 야간 근무 가능한 자(초과근무수당 지급)	
	○ 해당없음	